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3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 제정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안 제3조)

다. 협의회 임원 및 조직 (안 제4조)

-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으로 구성

라. 회의 및 의결(안 제6조)

마. 실무협의회(안 제11조)

바. 경비부담(안 제12조)

-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
참여자치단체는 결정된 부담금 납부
(2018년 참여자치단체 부담금 5,000천원)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 나. 예산조치: 협의회비는 논의 후 추후 결정
- 다. 전문: 별첨

5.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약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가입하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8년 8월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18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음.

- 우리구는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기 제정하였고 2019년도 전담팀 구성과 협의회 가입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자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긍정적 역할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 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4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어린이집 등에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칭: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 위 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 향후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건립 시 이전
- 규 모: 148㎡(저온창고)
- 공간구성: 입출하장, 피킹장, 위생전실, 검품실,
파레트·롤테이너 보관실 등 (운영사무실 별도)

- 운영인력: 8명 (센터장 1명, 경영관리 2명, 교육홍보·도농체험 1명, 식재료 물류배송 4명)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3년 이내
- 위탁사무
 -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 ▶ 참여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 대상품목: 농 축수산물,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가공식품 등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운영
 -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소요예산(2019년): 570,560천원

[단위:천원]

분야	소 계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배송비 (배송인력 인건비 포함)	안전성 검사비 등
합계	570,558	50,000	165,718	149,710	145,990	59,139
시비	387,844	25,000	82,859	74,855	145,990	59,139
구비	182,714	25,000	82,859	74,855		

※ 예산은 서울시 지원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향후 일정

- 2018. 11월: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19. 1월: 일상감사 의뢰
- 2019. 1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 2019. 2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2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공급식 센터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설치 예정인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 약 148㎡(45평, 사무실 별도) 규모로 설치 예정으로, 냉장·냉동 창고, 검수시설, 물류집배송장 시설을 갖추고 센터장 1명, 직원 3명, 물류배송 4명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 예정임.

센터의 역할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배송하고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와 도농 교류·체험 사업, 그 밖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센터 임대료, 사무직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6천만원은 구비 50%, 시비 50%이며 나머지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2억 1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됨.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센터를 설치하여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직거래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17년 시범 운영에 서울시 6개구가 참여하였고 '18년에는 4개구가 참여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거나 추진할 계획임.

-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의 위탁사무 추진은 수요자 요구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식재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물류

배송 등 식재료의 안전과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이 대행함으로써 우리구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탁참여 기준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
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13.12.12>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3.12.12>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